

2020년도 제2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3. 11.(수요일), 10:3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 최승수(분과위원장), 박성호, 박재화 위원, 박정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제3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27건(안건번호 제2020-6077호~6158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6077호~6086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6087호는 블로그에서 리믹스(remix)한 게임 음원을 제공한 사안임. 해당 저작물이 합법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함.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0-6088호~6091호는 일본 애니메이션 오프닝 곡을 네이버 스트리밍 또는 MP3 파일 형태로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6092호는 일본 애니메이션 오프닝 음원을 이메일로 보내주겠다는 사안임. 이메일 등을 통한 반복적인 송신 사실이 확인되어야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될 수 있는데, 해당 게시물의 댓글 내용이 비밀로 기재되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법복제물이 '전송'되었는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0-6093호는 댓글에 이메일을 기재하면 일본 애니메이션 음원을 보내주겠다는 사안임. 댓글 내용에 비추어 보면 불법복제물의 전송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6094호는 일본 애니메이션 오프닝 음원을 이메일로 보내주겠다는 사안임. 댓글 내용이 비밀로 기재되어 불법복제물이 '전송'되었는지 충분히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부결함.

안전번호 제2020-6095호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감상할 수 있도록 불법복제물로의 링크를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6146호는 뮤지컬 '밀녹' 영상물을 판매하는 게시물에 대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공연 실황 앨범 등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6147호는 뮤지컬 음원 MR을 판매하는 게시물에 대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6148호는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할 수 있고,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6149호는 문화칼럼을 블로그에 무단 전재한 사안임. 문화칼럼이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시정권고 행정조치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여 부결함.

안전번호 제2020-6150호~6158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전 게시물 90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한 8건(안건번호 제2020-539호~546호)
 - 회의결과: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2개 안건은 가결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6개 안건,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1개 안건은 부결함(1개 안건은 부결 사유가 중복됨).

- 제3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52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및 새롭게 접속차단 조치한 사이트 49개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등 모두 301개의 URL 정보에 대하여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52개 및 새롭게 접속차단 조치한 사이트 49개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등 모두 301개의 URL 정보는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2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안건상정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2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안건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A, B, C, D 위원 : 제척 사유 해당 사항 없음.

- B 위원 : 시정권고 함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6077호~608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민원 신고 내용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 2020-6087호는 2020. 2. 22. “☆☆☆☆☆ ☆☆ ☆☆☆☆☆ ☆☆☆☆ ☆☆☆☆ ☆☆☆☆”라는 내용으로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보호원은 같은 달 26. 관련 자료를 심의시스템에 등록하였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대면 심의 개최가 지체되었음.
 (안전번호 제2020-6087호가 제공되고 있는 URL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보여주면서)블로그 이용자가 2007. 2. 14.에 □□□□□에서 발매된 ◀◀◀◀◀ 게임 OST 수록곡 중 ‘△△△△△△△ △△△△△’의 ㉿㉿㉿㉿㉿㉿을 MP3 파일 형태로 제공함.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 ♣♣♣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해당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음원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으나, 아마존 재팬, 구글 검색 등을 통해 조사하여도 해당 음원을 판매하는 곳을 확인하지 못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6087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D 위원 : 블로그에 음악저작물을 무단 공유한 사안이나 해당 음원의 판매 여부가 불확실하여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A 위원 : 저작권 침해 가능성은 있으나,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

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해 보임.

- C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B 위원 : 같은 생각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608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6088호~6095호는 민원인이 직접 해당 URL을 기재하여 신고한 건임. 블로그 이용자가 일본 애니메이션의 오프닝 곡을 MP3파일 및 네이버 스트리밍 등의 형식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 블로그 운영자가 '♠♠ ♠♠♠♠♠ ♠♠♠♠♠♠♠♠♠'라고 안내사항에 기재한 것으로 보아 일본 애니메이션 오프닝 곡의 가사를 직접 번역한 것으로 추정되며, '음원 공유 공지'에는 이메일을 남겨달라고 되어 있어 이메일 주소를 남기면 음원을 이메일로 전송하는 것으로 보임. 한편, 심의대상 게시물들의 음원은 현재 '아마존 재팬'에서 판매되고 있음.

(안전번호 제2020-6088호가 제공되고 있는 URL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보여주면서)안전번호 제2020-6088호는 일본 애니메이션 '♡♡♡ ♡♡♡ ♡' ♡♡♡ ♡♡♡ ♡을 스트리밍, MP3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영어와 한국어 가사가 함께 기재되어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 하단에는 "●●●●● ●●●●●●●●"라는 내용이 있으며, "◇◇◇◇◇ ◇ ◇◇◇◇", "○○○○○○○○" 등 총 23개의 댓글이 달려 있음.

(안전번호 제2020-6089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6089호

는 일본 애니메이션 ‘○○ ○○ ○○ ○○’ 11화 오프닝 곡을 네이버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일본어와 한국어 가사가 함께 게시되어 있음.

(안전번호 제2020-6090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6090호는 일본 애니메이션 ‘□□□ □□□□’ 12화 오프닝 곡을 YouTube 스트리밍, MP3파일 형태로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일본어와 한국어 가사가 함께 게시되어 있음. YouTube로 직접 접속하면 영상 하단에 YouTube 라이선스 제공자 ‘[□□□□ □□□□□□ □□□□□□□□□□□□□□□□ □□ (□□□□□□) □□□.((□)□□□□□ □□□□□□□□ □□□□□□ □□□)]; □□□□ □□□□□□ □□□□□□□□□□□□, □□□□□□□□□□□□ □□ □□□ □□ □□’로 기재되어 있음.

- C 위원 : YouTube에서 해당 음원이 검색되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20-6090호가 제공되고 있는 URL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보여주면서)YouTube 스트리밍은 YouTube에서 수익 배분되겠지만 심의대상 게시물 하단에서 MP3파일을 제공하고 있음. 임베디드 링크를 통해 보이는 YouTube 콘텐츠보다는 게시물에서 MP3파일 형태로 음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람.
- C 위원 : Youtube에 게시된 영상을 MP3로 추출할 수 있는데 추출한 MP3파일을 공중에 제공하면 안 되는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 복제권, 전송권 침해라고 볼 수 있음. 개인 감상용 보관 등 사적인 이용이라 저작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나 MP3파일 형태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임.
- C 위원 :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YouTube에서 스트리밍이 가능하기 때

문에 해당 음원이 공개된 형태라고 볼 수 있지 않은지?

- A 위원 : 해당 음원을 공개된 형태라고 보기는 어려움. YouTube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일종의 이용허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플랫폼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이용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 YouTube 플랫폼에 대해서는 음원 저작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볼 여지가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20-6091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6091호는 일본 애니메이션 ‘▲▲▲▲▲ ▲ ▲▲▲’ 12화 오프닝 곡을 MP3 파일 형태로 제공한 사안임. 일본어와 한국어 가사가 포함되어 있음.
- B 위원 : 해당 음원을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하는 것인지 다운로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MP3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음.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당 음원 파일이 실제로 다운로드 가능한지?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재생하면서)실제로 다운로드 가능한 음원 파일이며, 재생도 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20-6092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6092호는 일본 애니메이션 ‘▲▲▲▲ ▲▲▲▲ ▲▲▲▲’ 13화 오프닝 곡을 YouTube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한 사안임. 영어와 한국어로 번역된 가사가 게시글에 포함되어 있고, 게시글 하단에 이메일을 남기면 음원을 보내주겠다고 기재되어 있음.

다만 해당 게시물에 대한 10개의 댓글이 모두 비밀 댓글로 작성되어 있어 실제로 음원을 이메일로 공중에게 반복하여 송신하였는지 확인이 불가함. (안전번호 제2020-6093호가 제공되고 있는 URL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보여주면서) 안전번호 제2020-6093호는 일본 애니메이션 '○○○ ○○' 24화 오프닝 곡을 네이버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한 사안임. 영어, 일본어, 한국어 가사가 함께 게시되어 있고, 게시글 하단에 이메일을 남기면 음원을 보내주겠다고 기재되어 있음. 41개의 댓글은 대부분 비밀 댓글로 되어 있으나, 한 개의 댓글은 공개 댓글로 되어 있음. 그 내용은 댓글 작성자가 이메일을 남기고, 게시자가 '㉠㉠㉠㉠㉠㉠'라고 답장을 단 후, 다시 댓글 작성자가 '○○○○○○'라고 댓글을 달았음.

참고로 이메일로 특정한 개인에게 저작물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동일한 저작물을 다수의 사람에게 발송하는 경우에는 '전송'에 해당할 수 있음.

(안전번호 제2020-6094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6094호는 일본 애니메이션 '■ ■ ■ ■ ■ ■' 23화 오프닝 곡의 가사를 게시하고 이메일을 남기면 음원을 보내주겠다고 작성한 사안임. 다만 해당 게시물에 대한 댓글이 모두 비밀 댓글로 작성되어 있어 실제로 음원을 이메일로 공중에게 반복하여 송신하였는지 확인이 불가함.

(안전번호 제2020-6095호가 제공되고 있는 URL에 접속하여 게시물을 보여주면서) 안전번호 제2020-6095호는 블로그 이용자가 일본 애니메이션 '□ □ □ □' 20화 오프닝 곡을 '■■■■■■■■'에서 들을 수 있도록 링크를 설정한 사안임. '■■■■■■■■'에 게시된 음원은 저작권자 등의 허락을 받은 게시물은 아닌 것으로 보임. 참고로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네이버 스트리밍으로 해당 음원을 제공하였으나, 현재 저작권자의 요청에 의해 중지된 것으로 보임.

우리 심의위원회는 민사적인 방조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을 제공하는 링크 게시물에 대해서도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있음.

(‘Google’에서 ‘뮤지컬 밀녹’을 검색하고 검색 결과를 보여주면서)연
 관검색어에 ‘뮤지컬 밀녹 다운’, ‘뮤지컬 밀녹 교환’, ‘뮤지컬 밀녹 판
 매’, ‘뮤지컬 밀캠 판매’ 등이 있음. 검색 결과로는 ‘뮤지컬을 훔치는
 관객들..’밀캠’과 ‘밀녹’을 아시나요 - 경향신문’, “무허가 공연’에 ‘
 밀녹’까지…위태로운 뮤지컬 저작권 - 이데일리’ 등 기사가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은 아니지만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
 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됨.

(안전번호 제2020-6146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6146
 호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이용자가 뮤지컬 공연을 촬영한 영상물
 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
 본문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고 적혀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 따르
 면 뮤지컬 ‘◆◆◆◆◆’, ‘■□■□’, ‘◆◆◆’, ‘●●●●’, ‘○●○●○’,
 ‘⊕ ⊕⊕ ⊕⊕⊕’, ‘◻◻’, ‘㉀㉀㉀㉀’, ‘◇◇◇’, ‘△△ △△△△’, ‘△
 △△△’ 등 다수의 밀녹을 판매하는 것으로 보임. 그리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와 같은 복수의 댓글이 달려 있는 것으로 보아 게시자가 뮤지컬
 ‘밀녹’ 영상물을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그렇다면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에서 뮤지컬 '□□□□□' 공연실황 앨범 판매 페이지를 보여주면서)참고로 'yes24'에서 여러 개의 저작물 중 뮤지컬 '□□□□□'를 검색해봤더니, 해당 저작물의 공연실황 앨범이 약 52,000원에 판매되고 있음. 뮤지컬 제작사 등은 공연실황 앨범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것으로 보임.

한편, 이메일로 특정한 개인에게 저작물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동일한 저작물을 다수의 사람에게 발송하는 경우에는 '전송'에 해당할 수 있음. 심의위원회는 불법복제물 전송과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만으로도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인정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할 수 있음.

(안전번호 제2020-6147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6147호는 안전번호 제2020-6146호와 다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이용자가 '○○○○○ ○○ ○○○○○○○○, ○○○○ ○○'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한 사안임.

대법원 판시에 따라 심의대상 게시물의 곡들은 뮤지컬 '□□□□□'의 구성 부분이지만,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하고 개별적인 이용이 가능하므로 독자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심의안전 게시물에서 저작물 이용은 직접 영리 목적으로 저작물을 무단 제공하고 있으며 생산적·변용적 이용행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심의안전 게시물에서 이용한 저작물은 고도로 창조적인 성격의 저작물이라는 점, 심의안전 게시물의 음원파일은 뮤지컬 전체로 보면 하나의 곡에 불과하지만 하나의 '곡'이 독립적인 저작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작물 전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의 곡은 하나의 독립적인 저작물로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의안전 게시물이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다만, 심의위원회 심의가 대심제가 아닌 관계로 심의대상 게시물 작성자의 의견 청취와 공정이용 해당여부 판단에 한계가 있음. 또한 해당 음원(MR)에는 뮤지컬 배우의 실연이 포함되어 있지 아닐 가능성 큰 점, 합법 시장에서 목소리 없는 음원(MR)만을 판매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 작성자가 직접 해당 음원(MR)을 만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곡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

- A 위원 : 안전번호 제2020-6147호의 음원(MR)을 들어 볼 수 없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음원(MR)을 듣기 위해서는 구매를 해야 함.
- A 위원 : MR은 음원이기도 하거니와 작곡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음. 설령 심의대상 게시물의 작성자가 녹음 시설을 통해 직접 해당 음원(MR)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작곡 저작물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판매했다고 볼 여지가 있음. 또한 합법 시장에서 목소리 없는 음원만을 판매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해서 해당 사안을 부결할 수 있는지 의문임.
- D 위원 : MR만 별도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B 위원 : 뮤지컬 음원(MR) 판매 사안은 경제적으로 잠재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봄.
- C 위원 : 전문위원의 보고에 따르면 뮤지컬 '밀녹' 영상 판매 게시물에 대한 사안은 가결 의견인데, 음원(MR) 판매 게시물에 대한 사안은 부결 의견인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 보임.
- A 위원 : 예컨대, 한미 FTA에 따라서 영화관에서 녹음하는 행위는 형

사 처벌을 받음. 그러나 뮤지컬은 법적으로 보호를 덜 받고 있음. 한국 뮤지컬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분야임을 고려하였을 때 정책적으로 뮤지컬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 B 위원 : 게시자가 음원(MR)의 의미를 오해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함. 뮤지컬 '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반주 음악인지 동영상 없이 소리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생각함. 몰래 뮤지컬의 소리 부분만을 녹음한 성격이 더 짙어 보임. 설령 단순한 반주 음악이라도 하더라도 해당 사안은 가결로 의결함이 타당해 보임.
- D 위원 : 해당 음원(MR)을 들을 수 없어 소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6146호, 6147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안전번호 제2020-6146호 심의대상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고, 안전번호 제2020-6147호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시정권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B 위원 : 안전번호 제2020-6146호, 6147호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해당 뮤지컬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C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D 위원 : 소수 의견으로, 안전번호 제2020-6146호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당 뮤지컬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보임. 다만, 제

2020-6147호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당 음원(MR)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소명되지 아니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614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6147호는 의견이 나뉜 것으로 보임. 다수 위원들의 입장에 따라 안전번호 제2020-614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6148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 이용자가 ‘** ** ** **에 저장된 약 1만 5천개의 음원파일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를 설정함. 해당 사안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할 수 있음.

우리 심의위원회는 민사적인 방조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불법복제물로의 연결을 제공하는 링크 게시물에 대해서도 시정권고를 가결하고 있음.

(구글 드라이브 클라우드 서비스 링크에 직접 접속하여 게시물을 보여주면서)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쉽게 그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클라우드 서비스에 음원파일을 저장한 사람과 심의대상 게시물에 링크를 설정한 사람이 동일인일 가능성이 큼. 심의대상 게시물의 “** **” 등의 표현에 비추어 보면 해당 게시자가 음원파일을 구글드라이브에 업로드한 것으로 보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6148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복제물 등에 해당되어 시정권고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함.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보임.
- A 위원 : 같은 의견임.
- D 위원 : 이견이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6148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149호는 권리자로 보이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 ♥♥♥♥♥♥ ♥♥♥♥♥♥)’)의 원본 기사를 보여주면서)인터넷신문 ‘♥♥♥♥♥♥♥♥(♥♥♥♥ ♥♥♥♥♥♥ ♥♥♥♥♥♥)’는 2019. 12. 29. “[xxxx]xxxx xx xx xxxx x...xxxx xxxxxxxx xx”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함. 원본 기사에서는 ‘♣♣♣♣’의 그림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시사적인 내용이나 논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해당 칼럼에는 종교 관련 광고도 있음. △△△△ 이용자는 2019. 12. 30. 오전 9시 32분에 해당 칼럼을 수정이나 증감 없이 블로그에 무단 전재함.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법 제27조의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 하단에는 ‘♥♥♥♥♥♥♥♥♥♥♥♥♥♥♥♥♥♥♥♥♥♥’라고 출처 표시

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링크는 없음.

해당 칼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저작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직업적으로 글쓰기를 하는 사람이 쓴 칼럼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저작물로 봄이 상당함. 해당 인터넷 신문의 원 게시물은 무료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만, 심의대상 게시물의 이용자층 등 성격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B 위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5조의6에 따르면 ‘불법복제물의 대상이 된 유형, 정품 가격, 선호도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음. 해당 문화 칼럼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데 개인 블로그에서 무단 전재하였다고 하여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해당 사안을 신고한 민원인은 편집인으로 권리자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임. 업무상 저작물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함. 참고로 각종 개인 블로그에 타인이 작성한 문화 칼럼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도 많음.
- C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 하단에 출처 표시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6149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문화 칼럼을 무단 복제·전송한 게시물은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 보임. 해당 사안은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A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해당 칼럼의 원 게시물은 무료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음.

- C 위원 : 해당 사안은 부결함이 마땅해 보임.
- D 위원 : 소수 의견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처럼 해당 사안은 저작자의 허락 없이 해당 칼럼을 무단으로 복제·전송하였으므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안전번호 제2020-6149호는 의견이 나뉜 것으로 보임. 다수 위원의 입장에 따라 안전번호 제2020-614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 하는 것에 대해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6150호~6158호는 권리자인 민원인이 “□□ □□□ ”□□□ □□□ □□□“□ □□□□□□ □□ □□□□□□.”라는 내용으로 신고한 총 9건 게시물에 대한 사안임. 웹하드에서 출판, 만화 불법복제물을 판매함.
 (안전번호 제2020-6150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6150호는 웹하드에서 출판 ‘○○○○ ○○○○ ○○○○ (○○:○○○○○○,○○○○○○,○○○○○○○○)’를 판매한 사안으로 데드카피로 보임.
 (안전번호 제2020-6158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6158호는 웹하드에서 만화 ‘●●●●(●●●●●●●●●●) (출판 : 학산문화사)’을 판매한 사안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6150호~6158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판매하고 있음.

- D 위원 : 해당 저작물들은 시중에서 판매 중임.
- A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B 위원 : 같은 생각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6150호~6158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096~6145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영화 ‘히트맨’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106호는 2020. 1. 22.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에서 214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3. 9. 현재 상영 중이고, 2020. 2. 25. 극장동시 VOD 서비스를 시작함.
(영화 ‘남산의 부장들’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6118호는 2020. 1. 22.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에서 162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3. 9. 현재 상영 중이고, 2020. 2. 18. 극장동시 VOD 서비스를 시작함.
(음악 ‘아무노래 (가수: 지코 (ZICO))’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음원을 들려주면서)안건번호 제2020-6138호의 음원파일은 2020. 1. 13. 발매된 곡으로 앨범 ‘아무노래’에 수록되어 있음. 해당 저작물의 실연자인 ‘지코 (ZICO)’가 작사, 작곡, 편곡을 하였음. 웹하드에서 해당 음

원파일은 50 포인트에 판매되고 있음. 해당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아무노래' 외 3곡의 음원파일을 이용할 수 있음.

(음악 'So What (가수: 이달의 소녀)'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음원을 들려주면서)안건번호 제2020-6143호의 음원파일은 2020. 2. 5. 발매된 곡으로 앨범 '[#]'에 수록되어 있음. 웹하드에서 해당 음원파일은 50 포인트에 판매되고 있음. 해당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해당 앨범의 모든 수록곡인 총 6개의 음원파일을 이용할 수 있음. 'YouTube'에서 해당 음원의 뮤직비디오 조회 수는 약 4백만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20-6096~6145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해당 사안들은 모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D 위원 : 불법복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사안들임.
- B 위원 :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C 위원 : 시정권고하는 의견에 동의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6096~6145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0-6087호, 제2020-6092호, 제2020-6094호, 제2020-6149호는 부결함. 안전번호 제2020-6077호~6086호, 제2020-6088호~6091호, 제2020-6093호, 제2020-6095호~6148호, 제2020-6150호~6158호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23쪽부터 29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2020-539호~546호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2개 계정에 대하여는 가결하되,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6개 안전,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1개 (부결사유 중복 1건)는 부결함.”

○ 제3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29쪽부터 38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970호~2259호는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3.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2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2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3. 18.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박성호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